

‘99. 7. 10. (토)

(제45회임시회제6차본회의)

김제시의의회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
— 심 사 보 고 서 —

은 영 위 원 회

김제시의회의회의규칙중개정규칙안심사보고서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및제안자: '99. 6. 21. 오인근의원외 6인
- 나. 회 부 일 자: '99. 6. 22.
- 다. 상 정 일 자: 제44회 김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차 운영위원회 ('99. 6. 23)에 상정.

2. 제안설명요지 (제안설명: 서면대체)

가. 제 안 이 유

- 의원이 본회의에서 시정질문 또는 안전심의와 관련한 질의. 토론 이외에도 안전심의 또는 시정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견을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고자 5분자유발언제도 신설.
- 시민에게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완화하고 방청인의 자유로운 방청권을 확대하고자 이와 관련한 일부 규제사항을 완화 및 폐지하고, 방청권의 규격 및 기재사항과 방청인의 퇴장조항을 신설하고자 함.

나. 주 요 골 자

- 5분자유발언 조항 신설(안 제38조의2)
- 방청인의 방청을 “허가”사항에서 의장이 원활한 회의진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만 방청권을 교부하여 허가(안 제82조)
- 방청인의 준수사항중 모자, 외투 착용행위 삭제(안 제86조제2호)
- 휴대전화기, 무선호출기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86조제8호)
- 방청인의 퇴장조항 신설(안 제86조의2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동 개정규칙안은 지방자치법 제37조의2(회의규칙) 및 지방자치법 제43조 (의장의 직무)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회의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것임.
- 의회는 회의질서를 유지하고 질서과괴 행위를 방지. 시정하며 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에 대한 제재등의 자율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, 이러한 질서유지 의무는 의회의 구성원인 의원은 물론 방청객이나 취재기자에게도 적용됨.
- 이에 따라 국회법 제105조에 명시된 5분자유발언제를 김제시의회 회의규칙에 도입하고 방청인의 방청권 확대. 방청인의 준수사항 및 방청인이 이를 위반했을 때 퇴장조항을 신설하는등 의회 회의 질서유지에 따른 제반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려는 사항으로서 모법인 지방자치법에 저촉되거나 기타 부당사항을 발견치 못함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- 질의(위원 유두희)
 - 지난 6월 14일 의원간담회시 논의된 “정기회 또는 임시회의 시정질문서 참석한 방청객에 대하여 중식을 제공할 수 있다”라는 규정을 회의규칙에 삽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검토는?
- 답변(전문위원 남해룡)
 - 법제처, 전라북도의회, 전주시의회등에 유선으로 문의한 결과, 회의규칙에 관련조항을 삽입하는 것은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회신을 받은 바 있음.

5. 토론요지

- 없 음

6. 심 사 결 과

- 총 5명 위원중 3명 위원이 참석, 3명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.